

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운영세칙

제정 2016. 02. 25.
개정 2017. 07. 18.
개정 2021. 11. 30.
개정 2022. 02. 18.
개정 2023. 07. 10.
개정 2023. 11. 14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규정」 제11조(운영세칙)에 근거하여 부산대학교의 전 학문분야의 교육품질관리 및 각 학문분야별 교육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교육인증원에 교육품질관리위원회, 공학교육인증위원회, 의생명교육인증위원회,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 및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육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,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위원은 교육품질관리부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원장이 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

③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위원은 부원장, 교육품질관리부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(부)의 책임교수(Program Director)로 구성한다.

④ 의생명교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위원은 교육품질관리부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원장이 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

⑤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위원은 부원장, 교육품질관리부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 전문가 중에서 6명 이내로 구성하며, 원장이 임명한다.

⑥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위원은 교육품질관리부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 전문가 중에서 6명 이내로 구성하며, 원장이 임명한다.

⑦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각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교육품질관리위원회: 전 학문분야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기획, 지원,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교육품질관리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사항

2.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세칙, 내규 및 지침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
3.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교양·전공·일반선택 교과목 운영 및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

② 공학교육인증위원회: 공학교육인증평가 준비 지원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, 지원,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사항
2. 각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세부운영세칙, 내규 및 지침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3. 각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교양·전공·일반선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

③ 의생명교육인증위원회: 의생명교육인증프로그램 즉, 의학교육인증, 치의학교육인증, 한의학교육인증 및 간호학교육인증 등 인증평가 준비 지원과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, 지원,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의생명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사항
2. 의생명교육인증프로그램 세부운영세칙, 내규 및 지침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3. 의생명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교양·전공·일반선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의생명교육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

④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: 건축학교육인증평가 준비 지원과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, 지원,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사항
2.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세부운영세칙, 내규 및 지침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3.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교양·전공·일반선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

⑤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: 경영학교육인증평가 준비 지원과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, 지원,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한 사항
2.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 세부운영세칙, 내규 및 지침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3.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 관련 교양·전공·일반선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

제4조(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) ① 교육인증원은 학문분야별 교육인증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전문교양과 기초 과학 교과목 및 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관리 주체가 된다.

② 학문분야별 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세부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보고)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교육인증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행정조직 구성) ① 교육인증원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부 6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기획연구부는 교육인증 정책연구, 정부재정지원 교육사업 기획·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총괄기획팀은 교육인증제 업무 총괄, 신규 사업 기획·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인증1팀은 공학계열 교육인증제 운영,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⑤ 인증2팀은 경영학, 약학 교육인증제 운영, 교내 CQI 체계 구축 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⑥ 인증3팀은 의학계열 교육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⑦ 전산지원팀은 통합교육인증지원시스템, e-포트폴리오시스템, 홈페이지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⑧ 센터사업팀은 부속센터 소관사업 기획 및 운영,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⑨ 부 및 각 팀에는 부장,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육인증원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.

⑩ 부 및 각 팀의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창의팩토리 운영) ① 교육인증원에 학생 및 교수의 창의융합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창의 팩토리를 운영한다.

② 창의팩토리에 기본 제조장비를 구비하여 학생 및 교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.

③ 창의팩토리 내 아이디어 기획 및 교류 공간인 창의충전소를 운영한다.

④ 교육인증원은 「부산대학교 기계설계전산화인력양성센터 규정」 제2조(기능)에 근거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 교육 공간인 창의융합실습실의 운영을 지원한다.

⑤ 창의팩토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의팩토리 세부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인증평가 재정지원) ① 교육인증원에서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하지 않는 학문분야의 평가 비용(인증평가비 및 유지비)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되 그 기준은 [별표 1]과 같이 한다.
(단, 부산대학교 대학회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증평가 대상학과와 교육인증 평가비용 자체 부담 비율은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음)

② 인증제를 유지중인 학과가 탈퇴(자의 또는 인증평가 탈락) 후 재진입시 발생하는 인증평가비 추가 비용(인증 탈퇴 이전 납부한 인증평가비 기준)은 전액 학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자체직원 인사) ① 교육인증원 자체직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대학교 대학회계계약직원 규정을 따른다.

- ② 교육인증원 자체직원의 직급은 연구보조원, 전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으로 하며, 필요사유에 의하여 근무 중인 자체직원의 직급을 전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승급 임용할 수 있다.
- ③ 교육인증원 자체직원의 승진 심사시 승급 직급별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승급 대상자를 선정한다.
1. 전임연구원 승급 조건
 - 석사학위 이상
 - 교육인증원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하며, 경력 산정기준은 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.
 2. 선임연구원 승급 조건
 - 박사학위 이상
 - 교육인증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하며, 경력 산정기준은 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.
- ④ 교육인증원 자체직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인증원 및 산하기관(공학교육혁신센터, 공학교육거점센터,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)에서 근무한 경력과 교육인증원 이전기관(공학교육혁신센터, 교육인증 지원센터)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에 반영하도록 한다.
- ⑤ 교육인증원 자체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, 특별휴가 이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자녀돌봄휴가 2일(미성년자 자녀에 한정)을 별도 부여하며, 주 40시간 근무를 충족하는 내에서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.

부칙(2016. 02. 25.)

제1조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07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11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02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07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1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교육인증 평가비용의 대상학과 자체 부담 비율 [제9조 관련]

인증유효기간별 총평가 소요비용 학과 운영비(대학회계)	4,500만원 이상	3,000만원 ~ 4,500만원 미만	3,000만원 미만
2억 이상	30%	25%	20%
1억 ~ 2억 미만	25%	20%	15%
6천만 ~ 1억 미만	20%	15%	10%
6천만원 미만	15%	10%	5%